

연구실적심사세칙

연구실적심사세칙

제정 2017. 11. 9 세칙 제 7 호

개정 2019. 9. 1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직원평가규정 제4조 제3항에 의한 연구실적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내연구실적 : 연구사업 운영규정 제3장에 명시된 원내연구의 결과물을 말한다.
2. 일반연구실적 : 원내연구실적을 제외한 모든 연구실적을 말한다.
3. 연구사업유치실적 : 국학진흥과 관련된 사업을 외부 기관 및 단체로부터 수탁한 실적을 말한다.

제3조(주관부서) 연구실적 평가 주관부서는 성과관리 부서로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

- ① 연구실적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연구실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며,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장 : 인사위원장
 2. 위 원: 연구자 신분의 기획위원
 3. 간 사 : 주관부서의 장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 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2 장 평가기준

제5조(평가영역) 평가영역은 원내 연구실적과 일반 연구실적, 연구사업 유치실적으로 구분한다.

제6조(평가대상)

- ① 원내연구실적은 평가대상 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출간 또는 학술지에 게재된 것으로 하며, 일반연구실적은 평가 당해연도에 출간 또는 학술지에 게재된 것으로 한다.
- ② 평가대상 연도 중간에 임용된 연구원의 경우 임용시기와 관계없이 평가대상 연도에 생산된 실적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소급적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7조(평가배점)

- ① 평가 총점은 부서장 보직에 있는 수석·책임연구위원은 20점으로 하고, 기타 연구위원은 40점으로 한다. <개정 2019. 9. 11.>
- ② 영역별 배점은 원내연구실적을 20점으로 하고, 일반 연구실적 및 연구사업 유치실적에 나머지를 배점한다.

제8조(원내연구실적)

- ① 원내연구실적은 여타의 실적으로 대체할 수 없다. 단, 당해연도 원내 연구가 확정된 이후에 임용된 자는 여타의 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② 원내 연구가 저·역서인 경우 여타 실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평가총점 40점을 부여한다.
- ③ 원내연구실적의 결과물 형태는 다음에 한한다.
 - 1. ISBN을 부여받고 공식 출간된 저·역서
 - 2. 제9조 1항에 규정된 논문(A)·논문(B)

제9조(일반연구실적)

- ① 일반 연구실적의 배점은 다음과 같이 한다.

유 형	배 점	비 고
저·역서	40	ISBN을 부여받고 공식 출간된 저·역서에 한하며, 수준 및 분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부여점수를 조정할 수 있음
논문(A)	20	한국연구재단이 인정하는 국제공인 학술지 및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 게재 논문
논문(B)	10	일반 학술지 게재 논문

- ② 공동저술 및 번역, 공동논문의 경우 배점을 저자 수로 나눈 점수를 부여한다. 단, 공동저자가 5인 이상일 경우 배점의 20%를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연구사업 유치실적)

- ① 유치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배점한다. 단, 유치실적은 간접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 1. 1.5억원 이상 : 10점
 - 2. 1억원 ~ 1.5억원 미만 : 8점
 - 3. 0.5억원 ~ 1억원 미만 : 6점
 - 4. 0.1억원 ~ 0.5억원 미만 : 4점
- ② 공헌도에 따른 점수는 다음과 같이 부여하며, 최초 유치에만 적용한다.
 - 1. 연구책임자 : 해당 배점의 100%
 - 2. 공동연구원 : 해당 배점의 60%
- ③ 계속사업인 경우 연구책임자에게만 해당 배점의 50%를 부여한다.
- ④ 연구사업 유치실적의 적합성 여부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1조(중복연구실적) 연구원 본인이 미발표한 업적과 연구방법 및 내용이 일치하며 주요 결론이 동일한 형태의 연구업적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3 장 평가 절차

제12조(실적제출)

- ① 연구원은 매년 1월 10일까지 연구실적 평가보고서([별표 1] 이하 ‘보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연구실적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역서 : 원본
 2. 논문 : 게재 학술지 또는 별쇄본(원본대조필)
- ③ 지역서는 1판에 한하며, 전면개정판인 경우 적합여부는 위원회의 판단에 따른다.
- ④ 논문 별쇄본을 제출할 때에는 원본 대조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⑤ 원내 연구실적 결과물이 책자일 때 공동연구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발간이 불가능한 경우 원고형태로 이를 대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부 여부는 위원회에서 판정한다.

제13조(실적심의)

-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보고서를 수합하여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 ② 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가 확정되면 주관부서의 장은 1월 31일까지 이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결과통보) 원장의 결재를 얻은 평가결과는 즉시 인사부서와 해당 연구원에게 통보하며,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5조(재심 청구)

- ① 연구실적평가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연구원은 결과를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연구실적평가재심청구서([별표 2])에 의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제출서류 미비 등 본인의 귀책사유가 분명한 경우는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접수된 재심청구서를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해야 하며, 재심 결과는 재심 청구인에게 즉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평가의 예외 인정) 휴직, 징계, 공무에 의한 출장, 파견 연수,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평가대상 기간 중 6개월 이상 정상적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평가할 수 있다.

보 칙

제17조(원내 연구실적 인정) 이 세칙 시행 후 첫 번째 연구실적 심사 연도에는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연구실적으로 원내 연구실적을 대체할 수 있다.

제18조(원내 연구실적 인정) 제6조 1항이 처음 적용되는 평가대상연도에는 일반 연구실적으로
원내연구실적을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1.>

부 칙 (2017. 11. 9.)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9. 1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관 리 번 호	-
------------------	---

년도 연구실적평가보고서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한 국 학 호 남 진 흥 원

연구실적물 목록

1. 원내연구실적

① 저·역서

구분	제목	출판사	총면수	출판년·월

※ 구분란에 ‘저서/역서’ 표시

② 논문

구분	제목	게재지명(권/호)	발행기관	발행년·월

※ 구분란에 ‘등재/등재후보’ 표시

2. 일반연구실적

① 저·역서

구분	제목	저·역자수	출판사	총면수	출판년·월

※ 구분란에 ‘저서/역서’ 표시

② 논문

구분	제목	저자수	게재지명 (권/호)	발행기관	발행년·월

※ 제12조의 증빙자료 별첨

3. 연구사업유치실적

연구사업명	연구사업기간	수탁기관명	연구사업금액	비고

[별표 2]

연구원업적평가 재심청구서

____년도 연구업적 평가보고서의 심사결과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재심을 청구하오니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사유 :

소 속:

직 급:

성 명: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원내연구 참여확인서

참여자		직 급	성 명
	전체과제		
	세부과제		
<p style="text-align: center;">위 사람은 명기된 원내연구 과제 수행의 전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였으며, _____년도 연구실적심사 대상 결과물로 제출된 원고는 본 과제의 결과물임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40px;">년 월 일</p> <p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40px;"> 연구부장 인 </p>			

연구직 임용에 관한 세칙

연구직 임용에 관한 세칙

제정 2017. 11. 9 세칙 제 8 호

개정 2019. 9. 1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인사규정 제17조 제3항과 제6항에 의한 연구직 신규임용 및 재임용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신규임용이란 연구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것을, 재임용이란 동일직급을 계속 유지하는 계약을 각각 의미한다.

제 2 장 신규 임용

제3조(신규임용에 관한 용어정의)

- ① ‘연구실적’ 이라 함은 출판된 저서, 발표된 논문 및 연구보고서 등을 말한다.
- ② ‘연구경력’ 이라 함은 석사, 박사 학위과정 이수기관과 대학 또는 학술연구기관(원장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원장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연구에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 ③ ‘교육경력’ 이라 함은 대학 또는 학술연구기관(원장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원장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한 경력을 말한다.
- ④ ‘사업경력’ 이라 함은 대학 또는 학술연구기관(원장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원장이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서 각종 연구사업에 참여한 경력을 말한다.

제4조(연구실적물 심사)

- ① 연구직 신규임용 시 연구실적물의 심사를 행할 수 있다.
- ② 연구실적물 심사는 해당 전공분야의 연구자 3인 이상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그 중 과반수 이상은 원외 연구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실적 심사기준 등) 신규임용에 필요한 연구실적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은 임용직급, 임용대상전공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제6조(경력인정 기준) 연구직의 신규 임용 시 각종 경력인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 3 장 재임용

제7조(재임용 대상)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연구원 중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자를 재임용대상자로 한다.

제8조(재임용 기준)

- ① 재임용에 필요한 자격조건은 임용기간 동안 직원평가 점수 총점의 70% 취득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평가영역별 점수배점은 연구실적 40%, 기타 실적 60%로 한다.
- ③ 임용기간 동안 부서장 보직을 수행한 연구원은 근무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연도의 연구실적점수에 10점을 가산한다.

제9조(재임용 절차)

- ① 인사규정 제17조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연구원에 대하여는 직급별 임용기간 이내에 재임용을 할 수 있다.
- ② 원장은 재임용 대상 연구원에 대하여는 임용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재임용 심사 대상자임을 통지하여야 하며, 인사위원회에 연구원 재임용 심사를 위한 제반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 ③ 인사위원회는 재임용 여부에 대한 심사를 임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완료하고 이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보고받은 즉시 심사결과를 대상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재임용불가 시에는 통지문에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⑤ 재임용 불가통지를 받은 연구원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장에게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 ⑥ 원장은 제5항에 의한 재심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기간 종료 15일 전까지 재심사 등을 완료하고, 재임용 여부를 최종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2017. 11. 9.)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9. 1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9. 9. 11.>

연구직 신규임용시 경력 인정 기준

경 령 종 별	환산율
1. 석사학위 취득기간(2년에 한함)	100%
2. <삭제 2019. 9. 11.>	100%
3. 박사학위 취득기간(2년에 한함)(고등교육법 제31조 준용) <개정 2019. 9. 11.> 단, 3년 이상 박사과정을 이수한 경우 연구 또는 교육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3년 초과기간은 이를 연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100%
4. 학위 취득 후 대학(외국대학 포함) 및 전문 학술 연구기관(외국 연구 기관 포함)에서 연구 및 교육·연수에 종사한 년수	100%
5. 정부출연연구소, 대기업 부설연구소 등에서 교육에 종사한 년수	100%
6.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종사한 년수 <개정 2019. 9. 11.>	
가. 주당 10시간 이상	50%
나. 주당 9시간	45%
다. 주당 8시간	40%
라. 주당 7시간	35%
마. 주당 6시간	30%
바. 주당 5시간 이하	25%
7. 공공성, 대중성이 높았던 사업업적 및 수행책임도	
가. 상	100%
나. 중	70%
다. 하	50%
비고 : 경력 인정은 증빙서(경력증명서와 4대보험가입증명서) 에 의해 환산한다. <개정 2019. 9. 11.>	